

##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
공주시 제 2026-1691호

반출금지 구역	면적 (ha)	피해상황			행위제한 사항	위반 시 벌칙
		발생위치	면적 (ha)	감염목 수 (본)		
계	35,028	39필지	535.7	84		
이인면	북룡리	334	-	-		
	운암리	796	-	-		
	이곡리	238	-	-		
탄천면	덕지리	454	산52-1 외 2	6.0	6	
	삼각리	620	-	-	-	
	광명리	463	산47-1	2.6	1	
	안영리	421	산66-7	0.5	3	
	남산리	805	-	-	-	
	장선리	296	-	-	-	
	화정리	184	-	-	-	
반포면	대학리	587	-	122	2	
	상신리	771	-	-	-	
	하신리	389	산4, 137-1	5.6	12	
	공암리	290	-	-	-	
	봉곡리	639	-	-	-	
	학봉리	1,486	산30-1	246	2	
	온천리	936	420-3	0.1	1	
사곡면	회학리	425	-	-	-	
	대중리	431	산10	80	8	
	계실리	646	625, 산14	122	2	
	고당리	319				
	호계리	434				
	화월리	816	-	-	-	
	가교리	591	-	-	-	
정안면	신영리	928				
	평정리	800	-	-	-	
	화봉리	375	-	-	-	
	상룡리	275	-	-	-	
	인풍리	484	-	-	-	
	태성리	306	-	-	-	
	동	월미동	215	-	-	-
송선동		401	320-8 외 6	6.0	14	
동현동		473	-	-	-	
금흥동		293	-	-	-	
의당면	울정리	229	-	-	-	
	청룡리	576	65-4	0.08	1	
	유계리	554	-	-	-	
유구읍	탑곡리	633	산41	6.5	1	
	덕곡리	469	-	-	-	
	문금리	1,124	-	-	-	
	백교리	474	-	-	-	
	석남리	228	-	-	-	
	유구리	557	-	-	-	
	만천리	417	산14 외 4	2.8	10	
신평면	산정리	529	-	-	-	
	화흥리	593	-	-	-	
	쌍대리	936	산130 산132-3 산117	14.1	7	

1.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
2.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
3.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
4. 굴취(掘取)된 소나무류의 이동

1년 이하의 징역  
또는  
1천만원 이하의 벌금

	청흥리	481	-	-	-
	백룡리	515	산73-1, 산70	3.3	2
	영정리	462			
	입동리	425	산59-1	8.9	1
	동원리	519	-	-	-
	평소리	359	-	-	-
	선학리	438	-	-	-
	봉갑리	820	-	-	-
	대룡리	430	-	-	-
우성면	한천리	715	산53	2.7	1
	반촌리	217	-	-	-
	내산리	514	산24-1	1.0	1
	방문리	576	-	-	-
	상서리	395	-	-	-
	봉현리	544	산72	2.1	2
	보흥리	948	산43-11	9.4	1
	방흥리	339	-	-	-
	오동리	241	-	-	-
	용봉리	407	산11-1	1.7	1
	안양리	536	-	-	-
	동대리	269	산42	4.5	1
	대성리	271	-	-	-
	단지리	120	-	-	-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5일

공 주 시 장 인



# 소나무류 취급(이동)시 유의사항

구 분	반출금지구역	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
대상수종	소나무, 해송(곰솔), 잣나무, 섬잣나무	소나무, 해송(곰솔), 잣나무, 섬잣나무
소나무류 이동가능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나무류 <b>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</b> 단, 조경수·분재, 훈증처리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「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」을 발급 후 이동</li> <li>○ 산지전용허가지(각종공사장)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<b>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(이동금지)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나무류 이동가능 <b>조경수·분재·굴취목·원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주시 산림자원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「소나무류 생산확인증」을 발급 후 이동</b></li> </ul>
방 제 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착수시 「<b>재선충병방제계획서</b>」 (<b>소각·파쇄 등</b>) <b>공주시 산림자원과로 제출</b> ⇒ 처리완료 후 방제완료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제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.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「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」 제출 ⇒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</li> </ul>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(840-787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

□ 추가 : 사곡면 고당리· 호계리

※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: 사곡면 계실리 625, 계실리 산14  
(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·리 단위의 전체구역)

〈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도〉

